

2026년 제2회 법무부 전주소녀원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법무부 전주소녀원에서 근무할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
랍니다.

2026년 6월 2일

법무부 전주소녀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대체인력 (장애인 제한경쟁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1명	- 사무보조, 우체국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전주소녀원

2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7. 7. 29.까지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보수기준 : 월 2,287,730원 상당(급식비 포함, 세전)
- 후생복지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맞춤형복지비 지급
 -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훈령)」을 따름
- 근무장소 : 전주소녀원 행정지원과(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 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2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7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2항8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임용 가능함

○ 전라북도 전주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나. 자격요건

○ 해당없음

다. 우대사항(적극적 서류전형에 해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전산 및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1급 상당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2급 상당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 세서 2급)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공고일 이전의 실적으로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 봉사활동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봉사활동 실적은 일시 및 내용이 포함된 상세내역서 제출

※ 봉사활동 실적시간 중 ‘헌혈’ 시간은 봉사활동 실적 시간에서 제외함

■ 헌혈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기타 법령 우대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10% 또는 5% 가산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준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3호 해당자 : 만점의 5% 또는 3% 가산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전형(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 ⇒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응시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 ⇒ 위원이 담당업무 적합한 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 심사 후 10명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 서류전형 요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전산(통신·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자격증,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3호」에 의거한 해당자 가점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항목을 상, 중, 하로 평정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책임 : 근로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를 평정 시
-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를 평정 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채용공고	2026. 6. 2.(화) ~ 6. 12.(금)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원서접수	2026. 6. 8.(월) ~ 6. 12.(금)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우편 접수(등기) ※ 접수처 :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 온라인 접수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6. 24.(수)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개별통지
면접시험	2026. 6. 29.(월) 예정	○ 장소: 전주소년원 2층 어울림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7. 10.(금) 예정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점검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026. 6. 8.(월) ~ 2026. 6. 12.(금)
- 접수시간 :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전주소녀원 (행정지원과)	전북 전주시 덕진과 과학로 45-25 (우 55145)	063-900-2507	인사담당자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전주소녀원 행정지원과에
직접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송부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겹봉투에
“응시원서 재증”이라고 표기, 택배 및 퀵서비스, 인터넷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7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비 고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5	장애인 복지카드 복사본(뒷면 포함)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응시자격 확인
6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응시연령 및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8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9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10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1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12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13	최종학위(졸업) 증명서 사본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 학위(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제척 확인용으로만 사용,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14	기타 우대사항(자격증, 경력, 봉사·헌혈 실적) 증명서	원서접수 마감일 내 제출 해당자에 한함
15	전산 자격증 사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1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7	국가유공자법 제29조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3일 전까지 나라일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치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을 준용하여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로 제출(최종합격자 발표 공고문에서 정한 기일까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후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별지 제11호 서식)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7. 10. ~ '26. 8. 9.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자 (☎ 063-900-2507). 끝.

응시원서

본인은 법무부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2026년도 제2회 전주소년원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3년간 법무부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전주소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장애인 제한경쟁)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응시번호		응시분야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장애인 제한경쟁)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전주소년원장 印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전주소년원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장애인제한경쟁)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해당여부 : ‘해당’, ‘해당없음’으로 기재

자기소개서

성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장애인 제한경쟁)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사항	
2026. . . 작성자 : (인/서명)	

-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 ①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 불가하며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 ②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③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성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장애인 제한경쟁)

2026. . . 작성자 : (인/서명)

【작성요령】

- ①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변경 불가하며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 ② 근무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분야 이해도, 업무추진전략 등을 성실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성명, 주소, 연락처, 국적, 병역, 학력(학교명 등 포함), 자격·경력·학위 등</u>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무기계약근로자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주민등록번호</u>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무기계약근로자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범죄경력자료</u>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무기계약근로자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채용 관리)	자격, 경력, 단증 등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채용 관리 (비위면직여부조회))	비위면직 해당여부 확인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인사혁신처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주소년원장 귀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전주소년원(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 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전주 덕진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해당사항이 발견될 시 채용 취소 및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등)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전주소녀원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 반환 청구할 서류 반드시 기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주소녀원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